

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8. 30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라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10-1차 전원회의('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('11.11.30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~ 보고 나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- (2012-47(서)-184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의거, SK텔레콤(주)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 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인가 내용 >

구분	협 정 명
1	SKT(이동전화)와 LGU+간 지능형 MMS 상호접속협정
2	SKT(이동전화)와 LGU+(인터넷전화)간 영상전화서비스 상호접속협정
3	SKT(이동전화)와 온세텔레콤간 지능형 MMS 상호접속협정
4	SKT(이동전화)와 CJ헬로비전(인터넷전화)간 대표번호서비스 상호접속협정
5	SKT(이동전화)와 CJ헬로비전(인터넷전화)간 08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① SKT와 LGU+간 지능형 MMS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11.4월)에 의해 연결된 SKT의 이동전화망과 LGU+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지능형 MMS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SKT가 제공사업자인 LGU+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장문의 경우 9원/건, 멀티미디어는 56원/건을 적용키로 양사간 합의

② SKT와 LGU+간 영상전화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6. 3월)에 의해 연결된 SKT의 이동전화망과 舊 (주)데이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영상전화서비스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(발신사업자)가 제공사업자(착신사업자)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①인터넷전화 착신시 13.5원/분, ②이동전화 착신시 90원/분을 적용키로 양사간 합의

③ SKT와 온세텔레콤간 지능형 MMS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5. 6월)에 의해 연결된 SKT의 이동전화망과 온세텔레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지능형 MMS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SKT가 제공사업자인 온세텔레콤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장문의 경우 9원/건, 멀티미디어는 56원/건을 적용키로 양사간 합의

④ SKT와 CJ헬로비전간 대표번호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5. 12월)에 의해 연결된 SKT의 이동전화망과 舊 (주)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SKT가 제공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게 지급하며, 음성은 '11년 인터넷전화 접속요율인 10.4813원/분으로 적용하고, SMS는 5원/건으로 양사간 합의

⑤ SKT와 CJ헬로비전간 08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5. 12월)에 의해 연결된 SKT의 이동전화망과 舊 (주)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080착신자요금 부담서비스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080서비스의 특성상 제공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이용사업자인 S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'11년 SKT 이동전화 접속요율인 30.5015원/분으로 적용

나.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2-47(서)-185)

- 방송법 제31조(방송평가위원회)에 의거, 원안대로 총 7인의 후보자를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명단(총 7인) >

분 야		성 명	성 별	현 직
위원장		김충식	남	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
위원	시청자단체	이경화	여	학부모 정보감시단 대표
	방송	김관규	남	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	방송	성동규	남	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	법률	이희정	여	고려대 법학과 교수
	회계	최 달	여	삼일회계법인 상무보
	행정	이은국	남	연세대 행정학과 교수

※ 임기 1년, 연임 가능

다.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2-47(서)-186)

- 「방송법」 제35조의5에 의거,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궐위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정윤식 교수를 위원(위원장)으로 위촉하기로 의결함

※ 임기 : 전임자의 잔여임기(2012. 9. 1. ~ 2014. 4. 13)

라. 「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47(서)-187)

-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12.7.18. 시행)으로 의무 송출되는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(신청 방법) 신청법인은 인정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
- ② (공표 및 교부)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인정 결과를 공표하고, 인정된 신청법인에게 인정서를 교부

○ 향후일정

- 관보게재 및 시행 : '12. 9월 중

③ 보고사항

가.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, 신규서비스 출시 등 통신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회계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통신사업자 회계보고 의무 완화

(1) 영업보고서 제출사업자 기준 완화

-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방통위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 기간통신매출액 100억원미만의 사업자는 간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

·간이보고 대상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자의 회계작성 부담을 경감함

(2) 상반기 회계자료 제출 의무 폐지

- 기간통신사업자는 영업보고서 제출 외에도 통계보고 의무에 따라 상반기 회계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함

·상반기 회계자료는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상 활용도가 높지 않고, 각 사업자의 IR자료로 대체활용이 가능하므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함

(3) 서비스 통합

- 기간통신역무의 세부서비스(총 28개) 중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함

현행	개정안
o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o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	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
o 위성휴대통신서비스 o 위성통신서비스	위성통신서비스
o 무선호출서비스 o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	기타서비스에 포함

② 회계규정 현행화

(1) 신규서비스 회계 분리

- 서비스별 접속료 및 도매대가 산정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회계정보 확보를 위하여, 'LTE 서비스'를 기존 3G서비스(IMT2000)와 별도로 신설함

(2) 수익항목 신설

- 전기통신 도매제공서비스를 고려하여 수익항목에 '도매제공수익'을 신설함
-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산에 따라, 요금제별 수익현황 파악 등을 위해 요금 수익을 '정액제 요금수익'과 '종량제 요금수익'으로 구분함

(3)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규정 개선

- 이동통신서비스(IMT2000 등)의 구분기준을 사용주파수 대역에 따른 구분에서 국제표준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함

현행	개정안
이동통신(IMT2000)서비스: 1.8 ~ 2.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	이동통신(IMT2000)서비스: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

o 향후 계획

- '12. 9~10월 : 행정예고, 규제심사
- '12. 11월 : 위원회 의결

나. 방송업무용 「무선설비규칙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운용 중인 방송 채널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실험(시범)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 내용

- 실험국을 통해 검증을 거친 기술로서 상용화를 앞둔 방송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,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수행(실험, 시범방송) 허용

※ 설비 운용, 기존 운용 중인 방송에의 송·수신 영향, 방송 목적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 결정

○ 향후 일정

- '12.9월 :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진행
- '12.9월 말 : 개정안 위원회 의결 및 발령(관보게재)